

국도33호선 확포장공사지하통로박스설치건의안
(의안번호 제599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1999. 12. 8 곽근영의원 외 12명
나. 회 부 일 자 : 1999. 12. 14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1999. 12. 21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주문

- 국도 33호선 4차선 확 · 포장공사인 고성~자은구간, 자은~상리구간 총 16.47km의 지하통로 4곳, 신호등 20곳을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교통사고 위험 및 지역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어 이의 해소차원에서 지하통로 박스로 변경 설치건의문 채택

3. 제안이유

- 관할 자치단체 및 경찰관서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 공사단행
- 구간내 신호등이 많아 차량통행 및 교통장애와 교통사고 빈발 우려
- 농경지 농기계 운행차질 및 영농경작 애로
- 지하 통로박스 설치로 문제점 근본적 해소대책 강구

4. 검토의견

- 본 안은 1999. 11. 29부터 12. 4까지 6일간의 1999년도 고성군 행정사무 감사 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1999. 12. 16 본 군의회 산업건설 위원장 정재욱의원 외 6명의 의원과 본 군의 건설과 도로담당 주사의 설계도서 지참 입회 하에 현지를 시찰함과 현장사무소를 방문하여 감리 단장과 면담 현장설명을 청취한 후 설계도면을 검토한 결과

- 금회 사업시행 구간 고성~상리간 16.47km의 기존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·포장하여 지하 통로박스 없이 전면 평면교차로 17개소를 설계대로 시공하여 준공 개통 시
- 각종 차량의 고속주행으로 지방도, 군도, 농어촌도로,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통행차량의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할 것으로 판단되며, 특히 도로변에 산재한 각 마을 진입로와 농로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및 농기계가 고속 주행하는 통행차량과의 노령화된 농촌주민들의 영농 생활에 사고다발이 상당히 예상되는 바이며,
- 기존 도로 확·포장사업에 반영되지 않은 시설물의 신규설치 변경 등에 대한 집단민원이 예상됨으로 인명을 중요시하는 도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발의된 건의문대로 채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1999. 12. 2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

□ 교차로 및 부체도로 개선지점 목록

○ 교차로

번호	교차로명 (측점)	위 치			문 제 점	대 책
		읍면	리	마을		
1	부포 (5+020)	"	"	외부포	통로 암거와 도로우측 4+420-5+020 도로좌측 4+760-5+020구간 부체 도로가 계획되지 않아 영농곤란	마을주민의 영농과 차량통행에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부체 도로 및 통로박스 설치
2	자은 (5+680)	"	"	내부포	지방도 및 군도와 교차 되며 좌·우측에 상죽암 군립공원과 연화산 도립 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4차선 도로개통시 교통 발생량과 사고가 많을 것으로 판단됨.	통행에 원할을 기할 수 있도록 입체교차로 와 취약 마을변 보도 블록 설치
3	망림 (8+080)	"	망림	망림	차량 고속주행으로 보행자, 이륜차, 농기계 등의 통행 불편 및 교통사고 발생 예상	마을주민과 차량 등이 안전통행 할 수 있도록 통로박스 설치
4	가동 (1+090)	"	오산	가동	"	"
5	하촌 (4+900)	"	신촌	하촌	"	"
6	고봉 (5+790)	"	고봉	고봉	"	"

○ 통로암거 및 부체도로

번호	위 치	문 제 점	대 책
1	상리 무선리 선동 (7+680)	7+140지점 통로박스과 도로좌측 7+140-7+280구간 부체도로가 반영되지 않아 영농곤란	도로 좌우변이 집단 우량농지로서 주민이 안전하게 영농할 수 있도록 통로박스과 부체도로 설치